

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473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8. .
제안자 : 박진희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 내용 중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맞춤법을 바르게 정비하며, 일부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삭제(안 제3조)
- ‘해결’ 을 ‘해결을’ 로, ‘자료제출’ 을 ‘자료 제출’ 로 맞춤법 정비 (안 제6조, 제7조)
- ‘투자유치’ 분야를 ‘기획전략’ 분야로 수정(안 제8조의2)
-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 신설(안 제14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7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해결” 을 “해결을” 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자료제출” 을 “자료 제출” 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2호 중 “투자유치” 를 “기획전략” 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~ ⑥ (생 략)</p> <p><u>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u></p> <p>제6조(회의) ① (생 략)</p> <p>② 정기회의는 격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특별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.</p> <p>1. 긴급한 현안 <u>해결</u> 위해 시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제7조(의견의 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및 심도 있는 안전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·기관·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<u>자료제출</u>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8조의2(특별보좌관) ① (생 략)</p> <p>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</p>	<p>제3조(구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해결</u>을 ----- -----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의견의 청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자료 제출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의2(특별보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람 중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투자유치, 청년, 일자리, 교육, 문화관광, 여성 및 복지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기획전략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